

신기훈 변호사 행정법 강의계획서

- I. 법령에서 출발하는 문제의 소재
 - II. 학설의 압축적 열거
 - III. 판례 핵심요건 사실의 정확한 적시 및 관련판례의 풍부한 설시
 - IV. 제시문·참조법령을 판례의 요건사실에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풍부한 사안포섭
 - V. 문제 요구내용과 일치하는 정확한 결론
- ⇒ 행정법 중요쟁점별 위 SET를 유기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으로 완성합니다.

■ ■ 담 당 신기훈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행정법)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법무담당관
- 중앙부처 국가소송총괄팀장 및 특별행정심판위원장

■ ■ 강의일정 2023년 11/21(화) ~ 12/8(금), 총 16회, 월~토 강의

■ ■ 시 간 [오후 실강반] ※주3회, 1시간/50점 모의고사가 진행됩니다.

- 1) 시험이 없는 날: 1시 40분 ~ 5시 20분
 - 2) 시험이 있는 날: (시험) 1시 ~ 2시 / (강의) 2시 10분 ~ 5시 20분
- ※ 개별 질문 및 답안지 상담: 매일 저녁 6시 ~ 7시

[익일 오전영상반]

- 1) 시험이 없는 날: 8시 40분 ~ 12시 10분
- 2) 시험이 있는 날: (시험) 8시 ~ 9시 / (강의) 9시 10분 ~ 12시 20분

■ ■ 강의교재 정언명령 행정법 쟁점 암기장(제1판, 신기훈 저, 서점구매) + 행정법 마인드맵(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한 장의 페이지에 집약, 무료제공)

■ ■ 교재안내 1. 주교재 : 정언명령 행정법 쟁점 암기장(제1판/2022년) /

행정법 주요 쟁점들에 대하여 단원의 경계를 허물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연습을 통하여 사례의 쟁점을 빠짐없이 추출하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중심으로 반드시 답안에 담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합니다.

2. 행정법 마인드맵 (행정법의 모든 쟁점을 한장의 페이지에 집약함)

행정법 마인드맵은 여러분의 행정법시험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집약된 단권화자료입니다. 행정법 전체의 주요 쟁점 내용 및 그 체계적 지위를 행정법 마인드맵에 투영하여 전체 쟁점의 입체적 인식을 스스로 체화합니다. 모든 쟁점이 녹아 있는 자신만의 마인드맵은 시험 마지막 시간까지 여러분의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 강의특징

1. 제시문과 참조법령에서 드러나는 출제자의 의도 분석 방식을 전달합니다.
2. 실제 답안에 답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가장 충실한 압축적이고 직관적 답안 작성 방식을 전수합니다.
3. 행정법 주요 쟁점이 상호 연계 되는 반복된 매트릭스를 행정법 마인드맵을 통해 실전적으로 마무리 합니다.
4. 강사가 직접 작성한 모범답안으로 여러분의 답안에 그대로 옮겨 답아내야 하는 것을 그대로 답아 낼수 있도록 형성하는 집약적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 강의목표

2순환 수료 후 수강생 모두 다음의 내용이 체화됩니다.

① 논점 유탈 및 무의적 기재사항(학설의 장황한 전개) 예방

- 마인드맵으로 논점유탈 방지를 선형적으로 대비합니다.

② 조문의 정확한 적시

- 논점별 주요 법령의 적시를 기계적으로 대비합니다.

③ 정확한 판례 문구(판례의 요건사실) 및 관련 판례의 풍부한 적시

- 주요 판례 요건사실을 답안용으로 집약하여 정리 및 암기합니다.

④ 제시문과 참조법령에서 쟁점을 모두 식별하고 이를 통하여 판례의 일반 요건과 풍부한 사안에의 포섭을 완성합니다.

- 차별적 점수 확보의 틀을 마련합니다.

■ 강의중심

- 행정법 마인드 맵에 답아내는 행정법 중요 쟁점간 연결 맥락 인식

- 모든 사례문제에서 기승전결의 마인드맵 플랫폼으로 인식 및 정리

예)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방안 기출사례

기	승	전	결
1. 대상적격 2. 무효등확인소송과 3. 취소소송의 관계 4. 제소기간(불가쟁력)	1. 관련청구 이송병합	1. 취소 vs. 무효 2. 위헌판결의 기속력 3. 위헌판결의 소급효 4. 공정력	1. 기각판결 2. 일부취소

- 실전적 답안작성 및 두터운 판례 요건사실 적시를 통한 차별적 구성능력 배양

예시: 【처분의 개념】

1. 문제점

행정소송상 처분의 개념에 대하여 좁게는 강학상의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보는 견해부터, 넓게는 강학상의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권력적 행위 일지라도 국민에게 계속적으로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치는 행위는 민사소송 등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형식상의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까지 여러 견해가 주장된다.

2. 학설

① 본래 취소소송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법적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시키는 형성소송이며 취소소송의 대상은 공정력을 갖는 행정행위에만 인정되므로 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실제법상 행정행위의 개념은 일치한다는 일원설 ② 실제법상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권력적 사실행위 및 국민의 권익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도 행소법 §2①제1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포함되는 형식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형식적 행정행위론 ③ 행소법상 처분개념은 실제법상 행정행위보다 넓은 행소법상의 독자적 개념으로서 실제법상 행정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국민의 권익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미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적 법규 등이 모두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쟁송법상 개념설 등이 대립한다.

tip) 사례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처분이 강학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개념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서술하는 것은 무익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작용(예:사실행위)이 처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당해 학설의 대립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3. 판례

판례는 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설정 또는 의무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관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2010두3541).” ②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절차를 준수하였는지는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2015두60617).” ③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6두33537).” 등 일련의 취지 하에 강학상의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권력적 사실행위인 단수처분(79누218),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권고조치(2005두487), 처분적 명령 및 고시(2003무23)등을 모두 처분으로 인정하였는바,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처분의 개념을 점차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검토

생각건대, 행소법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처분개념의 정의 및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27①)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국민의 권익확대 측면에서 구체적 개별적 사안별로 법치행정의 원칙(행정기본법 §8)까지도 고려하여 처분개념을 확대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진도별 강의내용(진도별 핵심논점)

강의회차	날짜	강의내용	비고
■ 제 1 회	11월 21일(화)	행정법의 전체 체계, 행정법 사례풀이 방법	
■ 제 2 회	11월 22일(수)	실질적 의미의 행정, 통치행위, 법률유보의 범위, 행정법의 일반원칙(비례, 평등, 자기구속,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 신의성실, 실권의 법리), 행정법의 효력(소급입법 및 소급적용금지원칙), 행정법 법원 상호간의 관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공무수탁사인	시험
■ 제 3 회	11월 23일(목)	공권의 확대화경향(제3유형에서의 원고적격),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적극적 공권(협회의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특별권력 관계에 대한 사법심사가능성, 행정법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리, 하자의 효과, 신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제 4 회	11월 24일(금)	행정입법(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시험
■ 제 5 회	11월 25일(토)	행정행위와 처분과의 관계, 행정행위의 종류(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판단여지, 허가, 특허, 인가, 공증, 제3자효적 행정행위)	
■ 제 6 회	11월 27일(월)	부관의 종류 및 한계,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선결문제,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시험
■ 제 7 회	11월 28일(화)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하자승계,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제 8 회	11월 29일(수)	공법상 계약,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행정의 자동결정, 행정절차법(처분절차, 절차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시험
■ 제 9 회	11월 30일(목)	정보공개제도, 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과징금과 부과금, 명단공표, 관허사업제한.	
■ 제 10 회	12월 1일(금)	국배법 제2조 요건해석과 관련된 학설과 판례,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선택적청구권인정여부, 이중배상금지, 국배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국배법 제5조의 요건해석 및 제6조에 관련된 학설과 판례,	시험
■ 제 11 회	12월 2일(토)	손실보상 전반, 행정심판	
■ 제 12 회	12월 4일(월)	행정소송 I (중요 사례 및 최신판례 풀이)	시험
■ 제 13 회	12월 5일(화)	행정소송 II (중요 사례 및 최신판례 풀이)	
■ 제 14 회	12월 6일(수)	행정소송 III (중요 사례 및 최신판례 풀이)	시험
■ 제 15 회	12월 7일(목)	행정법 각론 I	
■ 제 16 회	12월 8일(금)	행정법 각론 II	시험